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1. 편의제공 대상자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편의제공 신청절차

편의제공
내용확인

-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등급), 편의제공 내용 확인)



신청서 및 입증서류
사본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제공 신청서 및 입증서류 사본 제출

해당자	입증서류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확인증 사본 및 의사 진단(소견서) 사본 1부
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진단(소견)서 사본 1부

※ [참고2]를 확인하여 의사 진단서에 장애 등으로 인한 시험 응시에 불편사항 및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할 것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별첨



편의제공 여부 결정

- 편의제공 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편의제공 여부 개별 안내(문자)



입증서류
원본제출
(면접시험 당일)

- 면접시험일 편의제공 입증서류 제출

해당자	입증서류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원본대조필)○ 국가유공자 확인증(원본대조필) 및 의사진단(소견)서 사본 1부
나. 임신,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진단(소견)서 사본 1부



입증서류 확인

- 입증서류 확인

3. 편의제공 내용

구 분	내 용
별도 문제지	문제지 글자를 확대(118%, 200%, 350%) 또는 축소(82%) 제작
별도 답안지	답안지 글자 확대(118%, 200%, 350%)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별도 시험실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험실 배정 또는 좌석간격 조정
시험시간 연장	필기시험 시간을 1.5배 또는 최종면접시험 시간을 20분 연장
대독, 대필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를 읽어주거나 답안카드를 기재
장애인보조기구	시험운영과 시험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 허가
수화통역사	시험 진행 방송 및 감독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화 통역
도우미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를 배치

4.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

- 가.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입증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입증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참고1]의 편의 내용과 입증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서울의료원 채용담당자(02-2276-7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등급		필기시험 편의내용	최종면접 편의내용
지체 장애	상지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시험실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도우미 지원
	상지 4급~6급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별도 시험실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하지 1급~6급	· 별도 시험실 · 도우미 지원	
뇌병변 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시험실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도우미 지원
시각 장애	1급~2급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시험실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대독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도우미 지원
	3급~4급	· 시험시간 연장 · 별도 시험실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대필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5급~6급	· 시험시간 연장 ¹⁾ · 별도 시험실 · 별도 문제지 · 별도 답안지 ·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청각 장애	2급	· 시험시간 연장 ·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 필담면접
	3~6급	· 별도 시험실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언어, 신장, 심장장애		· 별도 시험실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뇌전증 장애		· 별도 시험실 · 발작이 있을 경우 발작시간 만큼 시험시간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장루·요루 장애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1)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시간 연장(1.5배) 허용

- 시각장애인 5급으로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인 6급으로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수화통역사, 도우미, 대독 및 대필자는 서울의료원에서 지정한자로 배치합니다.

※ 답안카드 대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시험문제 대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2]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나.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다.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p>①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p> <p>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p> <p>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p>	
	기타	<p>①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 눈의 운동장애</p> <p>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답안마킹이 어려움</p> <p>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p>	

[참고3] 채용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공고명		시험구분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input type="checkbox"/> 면접시험
성명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응시번호			
주소	(우편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적 장애 등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상세기술></div>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소견)서 ※ 원서접수 기간 내 해당서류 사본 제출 ※ 면접시험 당일 입증서류 지참		
편의제공 요청사항	시험시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1.5배) <input type="checkbox"/> 면접시험(20분 이내)	
	문제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문제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82%)	
	답안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답안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시험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사항 :))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도우미 <input type="checkbox"/> 필답면접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사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input type="checkbox"/>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